

〈서평〉

## 한국법사 체계 형성의 새로운 모색

- 沈羲基 저, 『韓國法制史講義』, 삼영사, 1997년, 624면 -

鄭肯植\*

### 1.

현재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역사소설과 대중을 위한 역사서가 못물 터지듯이 발간되었으며 한때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다. 출판물뿐만이 아니라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1)</sup> 사극은 텔레비전 방송의 단골 소재로 높은 시청율을 자랑하고 있다. 또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추리적 요소를 가미하여 극적인 완성도를 높인 방송물도 절찬리에 방송되고 있으며 책으로도 발간되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좀지난 이야기이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는 문민정부의 중요한 정치적 업적이었다. 또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등 5.18 사태의 주동자들을 불기소 처분을 하는 이유로 “위화도 回軍”이라는 역사적 사실까지 원용하였다 - 물론 검찰의 立論이 정당한가는 논외로 하고 이러한 현상들은 역사가 교과서나 소설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망각의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존재로서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반성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깨어 있는 국민으로 되었다.

눈을 돌려 법학계를 바라보자. 서가에 꽂혀 있는 법학서들 중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현재를 고민하고 있는 저자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 물론 현재의 법체가 전통과는 단절된 채 일본을 “불유쾌한 매개자”로 해서 받아들인 서구법에 터잡고 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은 위 질문과 정면충돌하는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1) 예컨대 『조선시대 생활사』, 『...시대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한권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류의 〈한권으로...〉 시리즈 등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발간되었다.

것을 모면할 수는 있는 빌미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이다. 따라서 “전통과의 단절”을 이유로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법학을 외면하는 것은 정당한 학문적 태도가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는 연구성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근래에 법학에서도 역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서가 제법 출간되었다. 특히 로마법과 서양법제사 부분에서는 눈부신 연구성과가 두툼한 연구서로 빛을 보았다.<sup>2)</sup> 그리고 한국법사 관련 연구서도 꾸준히 간행되고 있어서 역사적 현재에 합당한 우리 법학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인 沈羲基 교수가 그 동안 갈고 닦은 글들을 모아 『韓國法制史講義 - 韓國法史上의 판례와 읽을 거리』를 上梓하였다. 서평자가 한국법사 연구의 험난한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인 석사과정부터 심희기 교수는 후배인 서평자를 자상히 이끌어주셨고 서평자는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공부를 해왔다. 그래서 과연 서평자가 위 저서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지만, 후배로서 저서 출간을 축하하는 뜻으로 또 다른 한편 법사학계 전체가 기뻐해야 할 일로 여겨 쓰기로 한다. 그런데 이미 김창록 교수가 본서의 내용 전부를 잘게 찢고 咀嚼하여 그 맛과 멋을 충분히 음미한 서평을 발표하였다.<sup>3)</sup> 그렇기 때문에 서평자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감하여 김창록 교수의 서평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로 한다.

## 2.

본서는 저자의 첫 저서, 『한국법사연구 - 토지소유와 공동체』(영남대 출판부, 1992) 이후의 저자의 발표논문들과 강의안을 수정하여 묶은 것이다. 그리고 출판 목적은 학부와 대학원 강의용 교재로 삼기 위해서이다(머리말). 본서는 6부 20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서양법제사에 대해서는 윤철홍, 「한국에서의 서양법사 연구현황과 과제」, 『법사학연구』 17(1996) 참조

3) 김창록, 「법의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읽을거리’」, 『법과 사회』 15(창작과 비평사 1997), 313-338면 참조

제1부는 한국법사<sup>4)</sup>에 대한 입문으로 총론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기본적인 법제관련 사료를 소개·설명하여 초학자들이 법제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으며(제1장), 그 동안의 한국법사에 대한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제2장), 미국에서의 법사학 연구동향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적 법사학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제3장).

제2부에서는 조선시대의 가족법을 宗法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제4장), 토지소유권(제5장), 토지소송과 묘지분쟁을 통해 민사소송법을 소개하고 있으며(제6장, 제7장), 제3부에서는 조선시대 刑事法源(제8장), 증거법(제9장), 형사절차(제10장)를 밝혔다.

제4부에서는 우선 共同體的 유대가 강하게 남아 있던 洞契와 宗中 소유의 재산이 일제기에 재편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제11장), 미군정기의 사법제도(제12장)와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제13장)의 개혁과정을 설명하였다. 제5부에서는 현행법제의 형성과정과 운영실태(제14장), 12.12와 5.18을 법사적 관점에서 다루었으며(제15장) 앞으로 지향해야 할 법문화를 모색하였다(제16장).

마지막으로 제6부에서는 응용학문 내지 법학방법론으로서의 법사학의 가치를 제시하고 취득시효의 역사성(제17장), 형사사법에 남아 있는 전통적 요소를 파헤쳤으며(제18장), 성범죄, 특히 近親強姦과 관련된 판결을 법사학적으로 해부하였고(제19장) 마지막으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법사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폭로하였다(제20장). 각장의 말미에는 참고독서물, 연습문제, 생각해볼 문제, 권장독서물 등을 제시하고 있다. 《大典會通》〈禮典〉[用文字式] 이하의 文書樣式과 書式集인 《儒胥必知》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sup>5)</sup>

저자는 시대적으로는 조선시대에서 가장 최근의 5.18재판까지, 내용적으로는 法源史, 형사법, 토지법, 가족법, 司法史 등 거의 전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전시대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기존의 한국법사 저서와는 달리 사료의 소개나 나열에 거친 것이 아니라 사료를 철저히 분석·해석하여 법이 갖는 사회적 함의

4) 저서의 제목은 “韓國法制史”로, 부제는 “韓國法史”로 표기되어 있다. 교과과정 등에서 〈법제사〉, 〈법사상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法史”보다는 “法制史”가 관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사와 사상사는 相補的이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은 학문상 무의미하며 따라서 제도사와 사상사를 포괄하는 “法史”가 더 타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김창록, 앞의 서평, 316-7면 참조). 아래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법사”를 쓰기로 한다.

5) 다른 사료도 준비하였다고 하나 분량상 제외하였다고 한다.

를 충분히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을 충분히 흡수하여 저자만의 아집에 빠지지 않은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저서는 역사에 관심이 없는 법학도만이 아니라 법학에 문외한인 역사학도에게도 법사학의 문을 열어주고 길을 가르켜 주는 계몽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장의 말미에는 관련된 현재의 자료를 소개하여 과거와 현재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두었다. 이 시도는 현재의 교과서가 현실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거나 비록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書自我 我自我”의 상태로 있는 강단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제 학생들은 마지막에 잠시 숨을 돌리고 교과서의 내용이 갖는 현실적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 교과서는 더욱 현실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초학자들에게 한국법사만이 아니라 함께 법학에 대한 흥미도 유발시킬 것이다. 이것이 활성화될 때 저자가 바라는 “대화와 토론이 장려되고, 관심과 애정에 터잡은 학술적 비판이 환영받는, 열려진 지적 풍토”(머리말)가 형성될 것이다.

본서에 수록된 논문들은 한결같이 한국법사에서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료소개 정도에 그친 분야를 다룬 것으로, 그야말로 황무지를 개척한 새로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또 일정한 방향성 없이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탄실한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일정한 시각에서 서술하였다. 특히 형사법분야는 연구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으며, 난해하기 그지 없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일관되고 간명한 설명과 정리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업적이다.

저자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로 이해하고 법사를 “한국인들의 법률적 정의논변의 규범적 틀과 그 틀이 적용된 정의논변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머리말).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한국의 사회와 역사 그리고 그 주체인 민중에 대한 사랑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共同體 문제의 해명에 노력하고 있는 저자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공동체 규범의 모색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 저자는 법사학을 好古의 관심을 갖는 호사가들이 하는 것이거나 현재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점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역사와 관련지워 법사적 논변을 전개하고 있는 제6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저서를 통해 법사학의 진가가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한국적 법학, 법문화 나아가 통일한국의 법질서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가교가 제

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점이 이 저서의 특징이며 또한 기존의 한국법사 저서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3.

저자는 『韓國法制史講義』를 학부와 대학원에서 한국법사 강의 교재로 출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학부에서 한국법제사, 법제사 강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sup>6)</sup> 이는 학생들의 무관심, 강의자의 부족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제대로 된 교과서가 없는 사정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저자는 다년간 한국법제사 강의를 토대로 전시대를 개괄하는 개설서보다 주제별로 된 저서를 구상하였고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이 책이다. 서평자도 한국법제사 강의를 해왔으며 항상 강의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 마땅한 교과서도 없고 또 전시대를 개괄하기에는 강의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서평자의 관심분야도 그리 넓은 편도 아니어서 전체를 다루게 되면 내용이 아무래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본서를 통독한 서평자는 일단 고민의 상당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어서 위안이 되었다. 거듭 감사를 드린다. 그렇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한국법제사 강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법사라는 전체 숲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를 알려줄 것인가? 물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이상 다행일 수 없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sup>7)</sup> 결국 강의자는 숲과 나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은 강의자의 한국법사의 의의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저자는 오랜 강의 경험에서 토픽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sup>8)</sup> 토

- 
- 6) “한국법제사”가 독립강좌로 개설되고 있는 대학은 소수이다. 또 법제사 강좌가 개설되는 대학도 강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민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양법제사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복수전공의 허용과 확대 등으로 이수학점과 교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대학 강의에서 한국법제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7) 다행으로 서울대학교에서는 한국법제사 외에 한국근대법사가 학부과정에 개설될 예정이며, 아울러 대학원 과정에는 한국법제사연구, 한국법제사특수연구[주제별 세부강좌는 12개임], 한국근대법사연구 등이 개설되어 있다.
- 8) 沈羲基, 「교육현장에서 본 한국法史연구과제」, 『법학연구』 36-1(부산대 법학연구소,

픽적 접근 방법은 숲보다는 나무에 치중하는 교수방법이다. 물론 저자도 늘 숲을 조감하고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주로 나무인 주제별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학부생에게 한국법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역사에 대한 바탕이 허약한 학생들에게는 한국법사의 전체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개별법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전통법과의 관계를 알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유용할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역사학도 법학도 아닌 “編入主義的 法史學”<sup>9)</sup>으로 빠져들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분량상으로도 학부용 교과서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로는 부적합하며 논문집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저서가 교과서의 형태로 출간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기존의 교과서와는 다르지만, 법학계의 문제점으로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교과서의 틀을 쓰고 있는 점은 “狗頭羊肉”<sup>10)</sup>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훌륭한 논문들을 교과서로 포장하여 그 가치를 외형상 평가절하시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학문의 발전에 크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첫 저서 서문에서 “다른나라 학자들이 지은 법사연구저서를 보면 울분이 치솟는다. ... 우리도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한시바빠 충실한 업적을 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다짐하게 된다.”라고 한국법사 연구의 부진에 대해 비분강개하고 사명감을 토로하였다. 필자는 이 저서로 사명감을 속으로는 달성하였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서평자의 생각이다. 본서에 수록된 논문들은 대부분 2~3년 전에 쓴 것이다. 저자는 한국법사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사학 전임교수가 아니라 실정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즐기치게 법사학 연구성과를 발표해왔다. 물론 저자 나름의

---

1995) 참조

- 9) “편입주의적 법사학”이란 현행법의 내용과 체계에 史料를 단순히 대입시키는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發見主義的 法史學”이라고 하는데, 사료 그 자체를 분석하고 규범적 의미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저자의 “법학적 법사학”과 “역사적 법사학”과 유사한 구분이다. 그러나 “편입주의적 법사학”은 사료의 나열에 가깝기 때문에 法學的 法史學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10) 이 표현은 저자의 『한국법사연구 : 토지소유와 공동체』에 대한 정종휴 교수의 논평에서 따온 것이다. 정종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학의 노작」, 『법과 사회』 7(창작과 비평사, 1993), 315-6면.

생각과 고려가 있었겠지만, 좀더 여유를 갖고 단일주제에 대한 단행본의 형태<sup>11)</sup>로 나왔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리고 여겨진다. 이제 울분은 울분으로만 그치고 말 것이 아니라 연구성과로 나와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럴 능력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억지를 좀 부려본다면, 부록으로 수록한 《儒胥必知》 등이 인쇄상태가 나빠 보기에 불편한 점이다. 물론 분량상의 제약이 있기는 하겠지만 좀더 크게하는 것이 독자를 위한 편일 것이다. 그리고 《大典會通》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발간한 활자본을 이용하였는데, “同價紅裳”이라는 말이 있듯이 朝鮮時代 板本을 제공했으면 독자들은 훨씬더 실감이 났을 것이다. 또 논문집을 교과서 형태로 꾸미다 보니 개별논문의 발표연도를 명기하지 않았다. 물론 관심이 있는 독자는 이미 논문을 보았거나 따로 찾겠지만, 명기하는 것이 독자에 대한 봉사일 것이다. 논문은 작성 당시의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발표연도를 밝히는 것이 당시 학계의 연구수준과 저자의 학문적 편력 등 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4.

위에서 저서의 개별적인 내용보다 전체적인 면에서 몇 마디를 언급하였다. 이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저서의 가치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법사 교과서 저술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용이 빈약하고 형식만 갖춘 서평을 마치기로 한다.

숲과 나무를 아우르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은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숲과 나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하는 것이 한국법사를 공부하는 우리의 사명이다. 물론 仁井田陞처럼 전시대를 포괄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개설서를 집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적·물적 연구역량과 여건으로는 이것을 당장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며 또 진술한 심정이다.<sup>12)</sup>

11) 필자도 이전에 이러한 결심을 밝힌 적이 있다. 심희기, 「復讐考序說」, 『법학연구』 26-1(부산대 법학연구소, 1983) 참조.

12) 저자와 서평자의 스승이신 瀛山 朴秉濠 교수는 정년퇴임을 앞둔 좌담에서 한국법사의 체계를 세우지 못한 것을 아쉬워 하면서 “동료 학자 다섯 명만 있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심희기 외, 「박병호 교수와의 대담」, 『법과 사회』 14(창작과 비평사, 1997), 165면.

현실을 수궁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 法源史 부분에서 숲을 그려 한국 법의 발전과정을 제시하고 시대별로 나무는 보여주어 숲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sup>13)</sup> 그러나 이 방법에도 문제는 있다. 모든 시대의 전체 모습을 그려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벅찬 작업일 것이다. 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대와 관련성이 강한 갑오개혁 이후의 근현대와 바로 그 이전인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sup>14)</sup>

또 한 방법으로는 저자가 이미 논문(주 8)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는 나무를 통해 숲을 보게 하는 방법이다. 저자는 강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모두 50개(조선시대 25, 근현대 25)의 주제와 관련사료 8개 그리고 전체 분량까지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취할 때 집필자의 관심분야 등에 따른 주제와 서술의 통일성이 문제로 될 수 있다. 또 강의자와 학생에게는 나무를 통해 숲을 보여주어거나 보아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한국법사 교과서 집필은 다른 법학 교과서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개 법전이라는 대상과 그에 대한 해석인 판례가있으며 게다가 다양한 종류의 기존 교과서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 서술내용도 어느 정도 객관적[通觀]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법사의 경우, 물론 사료의 해석이라는 점에서는 법조문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집필자의 주관이 개재되어 객관적이기 어렵고[역사해석], 게다가 전범으로 삼을 만한 기존의 업적도 드물다.<sup>15)</sup> 개별적 연구가 부진하며 또 이 상황은 연구 여건상 조만간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에는 개별적인 연구 성과를 모아 집필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무척 힘든 작업이 될 터이다.

결국 현상황에서 이쉬운 대로 조선시대와 근현대를, 각 주제에 대해서는 그 주

13) 박병호, 『한국법제사』(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1986)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을 취한 예로 박지향, 『영국사』(까치, 1997)를 들 수 있는데, 각론 부분을 먼저 서술하고 통사를 뒤에 서술하였다.

14) 일례로 한국사회사 개설서인 『한국사회사의 이해』(문학과 지성사, 1995)를 들 수 있다. 신용하 교수 등 15명이 집필한 이 책은 서장, 제1부 전통 사회의 구조와 변동(7장), 제2 부근대 사회의 형성과 전개(8장), 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5) 물론 외국의 법사 교과서도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정법학과 달리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야말로 참고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한국법사는 우리의 역사적 현재에 입각하여 우리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청이 실정법보다 훨씬 더 강한 분야일 것이다.

제의 연구자가 분담하여 집필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집필자들이 상호토의를 통하여 서로를 확인하여 일관된 목적의식을 갖게 된다면 숲을 그려도 나무를 빠뜨리지 않고 또 나무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숲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도 크게 힘들지 않고 자기 연구를 병행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 역량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서평자의 몇 마디가 저서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했을지도 모르겠다. 옥에도 티가 있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고 하니, 후배가 어리광을 부리는 기분으로 선배의 업적에 일부러 흠집을 낸 것으로 여겨서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시기를 빈다.